

신청자 안내서 초안 3

모듈 3

다음을 주지하십시오: 이것은 면담 초안만이다. 잠재적인 지원자는 새로운 gTLD 프로그램의 제시한 세부사항 어떤을 프로그램이 더 의논 및 개정에 지배를 받는 남아 있는 때 의지하면 안된다.

이 문서는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ICANN)에서 정확한 번역을 했지만, 영어가 ICANN 의 주 언어이고, 영문 원본만이 공식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2009 년 10 월 2 일

모듈 3

분쟁 해결 소송

이 모듈에서는 이의제기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목적, gTLD 신청에 대한 정식 이의제기를 수용하기 위한 사유,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이에 응답하기 위한 일반 절차 및 분쟁 해결 소송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모듈에서는 각 분쟁 해결 패널이 전문가 판단에 도달하는 데 적용할 기본 지침 또는 표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가 제출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해당 이의제기가 제출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절차 및 옵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3.1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목적 및 개요

독립적인 분쟁 해결 프로세스는 제한된 특정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신청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정식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적격한 당사자가 적격 전문가 패널이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이의제기를 검토 대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에 설명된 4 개의 사유에 대해서만 정식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식 이의제기를 제출하면 분쟁 해결 소송이 시작됩니다. gTLD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신청자는 이 gTLD 분쟁 해결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음을 수락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의제기자는 이의제기를 제출함으로써 이 gTLD 분쟁 해결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음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3.1.1 이의제기 사유

다음 4 개 사유 중 하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혼동 이의제기 - 신청 gTLD 문자열이 기존 TLD 또는 동일한 신청 기간의 다른 신청 gTLD 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법적 권리 이의제기 - 신청 gTLD 문자열이 이의제기자의 기존 법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윤리 및 공공 질서 이의제기 - 신청 gTLD 문자열이 국제법 원칙 하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윤리 및 공공 질서 법 규범에 반합니다.

커뮤니티 이의제기 - gTLD 문자열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커뮤니티의 상당수 회원이 gTLD 신청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이의제기 사유의 이론적 근거는 새 gTLD 에 대한 ICANN 정책 개발 프로세스의 최종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gnso.icann.org/issues/new-gtlds/pdp-dec05-fr-part-08aug07.htm> 을 참조하십시오.

3.1.2 이의제기 자격

이의제기자가 자신의 이의제기를 고려 대상이 되게 하려면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의 일부로, 해당 DRSP(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전문가 패널이 모든 이의제기를 검토하여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4 개 이의제기 사유의 자격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제기 사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람
문자열 혼동	기존 TLD 운영자 또는 현재 기간의 gTLD 신청자
법적 권리	권리 소유자
윤리 및 공공 질서	이의제기자에 대한 자격 제한은 없지만, 불필요한 이의제기의 조기 종결을 위해 "신속한 검토" 대상임
커뮤니티	설립 기관

3.1.2.1 문자열 혼동 이의제기

두 가지 유형의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을 가집니다.

- 기존 TLD 운영자가 문자열 혼동 이의제기를 제출하여 신청 gTLD와 현재 운영되는 TLD 간의 문자열 혼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두 신청자 간의 문자열 혼동이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경우,** 이 신청 기간의 모든 gTLD 신청자가 문자열 혼동 이의제기를 제출하여 다른 신청자의 신청 gTLD와 자신이 신청한 gTLD 간의 문자열 혼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자는 이미 경합 집합에 포함된 다른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존 TLD 운영자가 신청자에 대한 문자열 혼동 주장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신청이 거부됩니다.

gTLD 신청자가 다른 신청자에 대한 문자열 혼동 주장에 성공하는 경우 두 신청자는 모두 경합 집합에 배치되고 경합 해결 절차(모듈 4, 문자열 경합 절차)에 회부됩니다. 한 gTLD 신청자가 다른 gTLD 신청자에 대한 이의제기에 실패하는 경우 두 신청자 모두 경합에서 서로를 고려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1.2.2 법적 권리 이의제기

권리 소유자만 법적 권리 이의제기를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의제기자는 이의제기 시 신청 gTLD에 의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기존 법적 권리에 대한 출처와 문서(등록 상표 또는 미등록 상표 포함 가능)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1.2.3 윤리 및 공공 질서 이의제기

누구나 윤리 및 공공 질서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적격 기준 때문에, 이의제기자는 불필요한 이의제기나 이의제기 남용을 식별하여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신속한 검토"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이의제기 권리의 남용으로 판단되는 이의제기는 언제든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1.2.4 커뮤니티 이의제기

명확히 서술되는 커뮤니티에 관련된 설립 기관은 커뮤니티 이의제기를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의제기자가 지정한 커뮤니티는 이의제기 대상인 신청의 신청 gTLD 문자열에 밀접하게 관련된 커뮤니티여야 합니다. 커뮤니티 이의제기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이의제기자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설립 기관임 - 이 판단을 내리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정
- 기관이 존재한 기간 및
- 정식 헌장 또는 국내/국제 등록의 존재나 정부, 정부 내 조직 또는 조약에 의한 검증과 같은 존재의 공개적 기록 증거 오로지 gTLD 신청 프로세스와만 관련하여 설립된 기관이어서는 안됩니다.

명백히 서술되는 커뮤니티와 지속적인 관계가 있음 - 이 판단을 내리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 회원 자격 및 리더십에 참여하기 위한 메커니즘 존재,
- 관련 커뮤니티의 혜택에 관련된 기관의 목적,
- 관련 커뮤니티에 혜택을 제공하는 정기적 활동의 수행 및
- 커뮤니티의 정식 경계 수준

패널은 위에 나열된 요소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이의제기자가 적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각각의 모든 고려 요소가 충족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3.1.3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

분쟁 해결 소송을 시작하려면 게시된 기한 날짜까지 각 이의제기 사유에 대해 해당 DRSP 를 통해 직접 이의제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국제 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는 문자열 혼동 이의제기에 관해 제기된 분쟁을 관리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중재 및 조정 센터(The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법적 권리 이의제기에 관해 제기된 분쟁을 관리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 국제상공회의소의 전문 지식 국제 센터(The International Center of Expertise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윤리/공공 질서 및 커뮤니티 이의제기에 관해 제기된 분쟁을 관리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ICANN 은 관련 경험과 전문 지식 및 새 gTLD 프로그램에서 분쟁 소송을 관리할 의지와 능력을 기준으로 DRSP 를 선택했습니다. 선택 프로세스는 관심 표현(expressions of interest)¹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으로 시작하여 응답한 후보자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관심 표현 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확립된 서비스, 전문 지식, 세계적 역량 및 운영 역량을 비롯하여 제공자에 대한 여러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선택 프로세스의 중요한 측면은 분쟁에 대한 당사자들의 존중을 이끌어 낼 패널리스트를 고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3.1.4 이의제기 발생 시 옵션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신청을 소유한 신청자에게 다음 옵션이 제공됩니다.

¹ <http://www.icann.org/en/announcements/announcement-21dec07.htm> 을 참조하십시오.

신청자는 이의제기자와의 해결에 도달하여 이의제기나 신청을 철회하도록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의제기에 대한 응답을 제출하고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섹션 3.2 참조). 또는

신청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이의제기자가 승소하고 신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신청자가 이의제기에 대한 응답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제기자가 기본적으로 승소합니다.

3.1.5 독립 이의제기자

gTLD 신청에 대한 정식 이의제기는 IO(독립 이의제기자)에 의해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IO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인터넷을 사용하는 공공의 최상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합니다.

이 공공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독립 이의제기자는 윤리/공공 질서 및 커뮤니티 사유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ICANN 직원 및 ICANN 이사회는 IO에게 특정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IO가 이의제기를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IO는 공공 이익을 위해 이의제기를 시작하고 수행합니다.

집행 및 범위 — IO는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은" gTLD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O는 두 가지 유형의 이의제기를 제출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1) 윤리 및 공공 질서 이의제기 및 (2) 커뮤니티 이의제기. IO는 해당 이의제기에 대한 일반 지위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거된 사유로 이의제기를 제출할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하위 섹션 3.1.2 참조).

IO는 커뮤니티 이의제기가 제출된 경우에도 신청에 대한 윤리 및 공공 질서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O 는 문자열 혼동 이의제기 또는 법적 권리 이의제기가 제출된 경우에도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이미 동일한 사유로 제출된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으면 IO 는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IO 는 이의제기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독립 평가를 내릴 때 공개 의견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CANN 은 해당 기간부터 초기 평가 기간을 거쳐 IO 가 이의제기를 제출할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IO 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선택 - IO 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ICANN 에 의해 선택되고 독립 고문으로 고용됩니다. 독립 이의제기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경험이 있고 존경을 받으며 어떠한 gTLD 신청자와도 연계되지 않는 개인입니다.

IO 후보에 대한 커뮤니티의 권고 사항은 환영하지만 IO 는 계속해서 어떠한 gTLD 신청자와도 독립적이고 연계되지 않아야 합니다. IO 가 독립성을 선언하고 유지하기 위한 모델로는 판결 및 국제 중재자에 대한 다양한 윤리 규정을 사용합니다.

IO 의 임기는 단일 gTLD 신청 기간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제한되며, 갱신 가능합니다.

예산 및 자금 조달 - IO 의 예산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a) 급여 및 운영 비용, 및 (b) 분쟁 해결 절차 비용 - 둘 다 새 gTLD 신청의 소송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소송의 이의제기자인 IO 는 모든 다른 이의제기자와 마찬가지로, 패널 수수료를 포함한 제출 및 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IO 가 승소할 경우 DRSP 는 IO 가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또한 IO 는 DRSP 패널보다 먼저 이의제기를 제공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며, 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외부 상담(고용된 경우) 수수료 및 비용과 법적 조사 또는 사실 조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3.2 제출 절차

이 섹션에 포함된 정보는 제출 절차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 이의제기 및
- 이의제기에 대한 응답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서에 대해서는 이 모듈의 첨부로 포함된 새 gTLD 분쟁 해결 절차("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이 모듈에 제공된 정보와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각 이의제기 사유에 고유한 각 DRSP의 규칙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문자열 혼동 이의제기의 경우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은 ICANN의 새 gTLD 프로그램에 대한 ICDR 보충 절차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개발되고 있으며 곧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권리 이의제기의 경우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은 새 gTLD 분쟁 해결에 대한 WIPO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초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모듈과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 윤리 및 공공 질서 이의제기의 경우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은 국제상공회의소의 전문 지식 규칙입니다.
- 커뮤니티 이의제기의 경우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은 국제상공회의소의 전문 지식 규칙입니다.

3.2.1 이의제기 제출 절차

ICANN이 게시한 신청에 대한 정식 이의제기를 제출하려는 모든 당사자는 이 하위 섹션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자가 다른 gTLD 신청에 대한 정식 이의제기를 제출하려면 이러한 동일 절차를 따릅니다.

- 모든 이의제기는 게시된 기한 날짜까지 해당 DRSP 를 통해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DRSP 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이의제기는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각 이의제기는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이의제기자는 개별 이의제기를 제출하고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각 신청에 수반되는 제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자가 둘 이상의 사유로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이의제기자는 개별 이의제기를 제출하고 각 이의제기 사유에 수반되는 제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자가 제출하는 각 이의제기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이의제기자의 적격 기준에 대한 진술서, 즉, 이의제기자가 이의제기할 권리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이유.
- 다음을 포함한 이의제기 기준에 대한 설명:
 - 이의제기를 제출하는 특정 사유를 제공하는 진술서
 - 이의제기의 유효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이의제기를 주장하는 이유
- 이의제기자가 이의제기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문서의 사본

이의제기는 첨부를 포함하여 5000 단어 또는 20 페이지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의제기자는 모든 제출물의 사본을 신청자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에 관련된 DRSP 및 ICANN 에 제공해야 합니다(DRSP 와 이의제기자 간의 기밀 커뮤니케이션을 ICANN 에 제공하면 안 되는 경우 제외).

ICANN 및/또는 DRSP 는 제출되고 ICANN 에 통지된 대로 모든 이의제기를 나타내는 목록을 웹 사이트에 게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3.2.2 이의제기 제출 수수료

이의제기 제출 시 이의제기자는 관련 DRSP 가 설정 및 게시한 금액만큼의 제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DRSP 가 편견 없이 이의제기를 기각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모듈 1 의 섹션 1.5 를 참조하십시오.

3.2.3 응답 제출 절차

ICANN 이 제출된 모든 이의제기 목록을 게시했음을 통지하면 DRSP 는 당사자들에게 해당 통지 접수 후 30 일 이내에 응답을 제출해야 함을 통지합니다. 늦게 응답할 경우 DRSP 는 응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0 일 응답 기간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응답하지 않은 모든 신청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의제기자가 승소합니다.

- 모든 응답은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각 응답은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여러 이의제기에 응답하는 신청자는 개별 응답을 제출하고 각 이의제기에 응답하는 데 수반되는 제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응답은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하는 각 응답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이의제기자의 주장에 대한 항목별 응답
- 신청자가 응답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문서의 사본

응답은 첨부를 포함하여 5000 단어 또는 20 페이지 이하로 제한됩니다.

각 신청자는 모든 제출물의 사본을 신청자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에 관련된 DRSP 및 ICANN 에 제공해야 합니다(DRSP 와 응답자 간의 기밀 커뮤니케이션을 ICANN 에 제공하면 안 되는 경우 제외).

3.2.4 응답 제출 수수료

신청자가 응답을 제출할 때 신청자는 이의제기자가 지불한 제출 수수료와 동일한, 관련 DRSP 가 설정 및 게시한 금액만큼의 제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응답이 무시됩니다.

3.3 이의제기 처리 개요

다음 정보는 제기된 분쟁 소송을 관리하는 DRSP 의 프로세스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전체 내용은 '새 gTLD 분쟁 해결 절차'를 참조하십시오(이 모듈에 첨부로 포함됨).

3.3.1 관리 검토

각 DRSP 는 각 이의제기를 접수한 지 14 일 내에 각 건이 모든 절차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 차원에서 검토합니다. 접수한 이의제기 수에 따라 DRSP 는 이 마감 시간을 약간 연장하도록 ICANN 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DRSP 의 검토 결과 이의제기 건이 절차 규칙을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건은 정식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며 소송 절차가 계속됩니다. DRSP 의 검토 결과 이의제기 건이 절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DRSP 는 해당 건을 기각하고 처리를 종료하며, 이때 절차 규칙을 준수하는 새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는 이의제기자의 권리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DRSP 의 검토 또는 거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3.3.2 이의제기 건의 통합

DRSP가 접수한 이의제기 건을 모두 처리한 후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이의제기 건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RSP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기 전에 통합을 결정하며,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에서 통합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신청에 대해 여러 건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한 건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DRSP는 이의제기 통합 여부를 평가할 때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비하여 시간, 비용, 노력 및 일관성 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지 가늠합니다. DRSP는 모든 이의제기 건을 비슷한 일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의제기 건에 순위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gTLD 신청자 및 이의제기자가 이의제기 건의 통합을 제안할 수 있지만, 이 제안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DRSP의 독자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ICANN은 모든 DRSP에서 가능한 경우 가급적 문제를 통합하도록 장려합니다.

3.3.3 협상 및 중재

분쟁 해결 소송의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및/또는 중재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지만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협상/중재에 참여하기로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각 DRSP에는 이 프로세스를 추진할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있으며, DRSP는 이 옵션 및 관련 수수료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합니다.

중재자로 지명된 사람은 관련 분쟁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패널 위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상 또는 중재 수행과 관련하여 자동으로 시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는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DRSP 에 시간 연장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DRSP 또는 지명된 패널은 이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 연장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요청 시간 연장을 30 일로 제한해야 합니다.

3.3.4 전문가 패널 선택

패널은 지정 DRSP 가 각 진행 건에 대해 지명한 적격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전문가는 분쟁 해결 소송의 각 당사자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각 DRSP 는 이러한 독립성을 위해 채택한 고유 절차를 따르며, 여기에는 독립성 결여를 사유로 하여 전문가를 대체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소송에서 문자열 혼동 이의제기에 관여하는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적절한 경력을 가졌으며 소송에서 기존 법적 권리 이의제기에 관여하는 전문가가 한 명 또는 세 명(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시)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법률가로 인정 받으며 소송에서 윤리 및 공공 질서 이의제기에 관여하는 전문가가 세 명 있습니다.

소송에서 커뮤니티 이의제기에 관여하는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전문가, DRSP, ICANN, 해당 직원이나 임원 또는 고문은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소송과 관련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금지명령구제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어떠한 행동으로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3.3.5 판결

패널은 당사자가 이의제기 및 답변서 제출 외에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제출 시간 제한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합당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서 제작 절차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패널이 당사자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심리에 참가하는 일 없이 해결됩니다. 패널은 특정 상황에서 심리를 보류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3.3.6 전문가의 결정

DRSP의 최종 전문가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분쟁 및 조사 결과 요약
- 승소 당사자 식별 및
- 전문가 결정의 기반이 된 논거.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DRSP는 패널이 내린 모든 결정의 전문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패널의 조사 결과는 ICANN이 분쟁 해결 프로세스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결정 및 권고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3.3.7 분쟁 해결 비용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전에 DRSP는 이 절차에 따라 관리하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 목록 또는 비용 계산 방법 설명서를 게시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수수료 및 패널 위원 경비와 DRSP의 관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ICANN의 절차에서는 문자열 혼동 및 법적 권리 이의제기 소송의 경우 정액제로 패널리스트가 부과하고 공공 질서 및 커뮤니티 이의제기 진행의 경우에는 시간 비율로 패널리스트가 부과합니다.

패널을 구성한 지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DRSP는 총 비용을 예측하여 이의제기자와 신청자 모두에게 비용을 전액 선불하도록 요청합니다. 각 당사자는 DRSP의 지불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선불하고 지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DRSP 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가 지불한 신청 수수료는 이 비용 선지불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과 대비하여 정산됩니다.

DRSP 는 해결 소송 과정에서 총 비용 예상치를 개정하여 당사자에게 추가 선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RSP 가 추가 자료를 제출 받거나 심리를 개최하도록 결정한 경우 등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자가 이러한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 DRSP 는 이의제기를 기각하며 이의제기자가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이러한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 DSRP 는 이의제기를 유지하며 신청자가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심리가 개최되고 패널에서 전문가 결정이 내려진 후 DRSP 는 선불 비용을 승소 당사자에게 환불합니다.

3.4 분쟁 해결 원칙(표준)

각 패널은 적절한 일반 원칙(표준)을 이용하여 각 이의제기의 시비를 평가합니다. 각 유형의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의 원칙은 다음 절에서 명시합니다. 패널은 이러한 표준과 관련하여 국제법의 기타 관련 규칙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서 입증의 부담은 이의제기자가 집니다.

아래에 제시된 원칙은 현재 진행 중인 DRSP, 법률 전문가 및 일반 대중과의 논의를 기반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3.4.1 문자열 혼동 이의제기

문자열 혼동 이의제기에 대한 DRSP 패널 심리에서는 신청 gTLD 문자열이 문자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한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과 거의 비슷하여 속이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문자열 혼동이 존재합니다. 혼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려면 단순히 분별 있는 평균적인 인터넷 사용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확실히 혼동할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정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을 연상시키는 단순 연상의 경우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3.4.2 법적 권리 이의제기

GNSO 권고 사항 3 항("문자열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률 원칙하에서 인정되거나 이행 가능한 타인의 기존 법적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을 해석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법적 권리 이의제기를 다루는 DRSP 전문가 패널은 다음과 같은 비독점적 요소를 고려하여 신청 gTLD 에 대한 신청자의 잠재적 사용으로 인해 이의제기자의 등록/미등록 상표나 서비스표("마크")가 가진 특유의 특성 또는 평판이 불공정하게 이용되는지, 이의제기자의 마크가 가진 특유의 특성 또는 평판이 불합리하게 손상되는지, 또는 신청 gTLD 과 이의제기자의 마크 사이에 허용 불가능한 혼동의 가능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외견이나 발음 또는 의미상의 특징 면에서 신청 gTLD 가 이의제기자의 기존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2. 이의제기자가 마크 관련 권한을 취득하고 사용한 행위가 선의였는지 여부.
3. 관련 분야의 일반 대중이 gTLD 관련 기호를 이의제기자의 마크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신청자나 제 3 자의 마크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인식 범위.
4. gTLD 신청 시점에 신청자가 이의제기자의 마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해당 마크를 합당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없었는지 여부 및 신청자가 타인의 마크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TLD 신청이나 운영 또는 TLD 등록의 수행 패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gTLD 를 신청한 신청자의 의도.

5.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의에서 제공하거나 이의제기자의 마크 권한 적법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선의에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gTLD 해당 기호를 신청자가 사용했는지 또는 사용하도록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했는지 여부 및 해당 범위.
6. 신청자가 gTLD 해당 기호에 대한 마크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보유한 경우 기호 관련 권한 획득 및 기호 사용에 대한 권한이 선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신청자가 사용했다고 주장되는 gTLD 사용 건이나 신청자에 의한 잠재적인 gTLD 사용 시 권한 획득 또는 사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7. gTLD 해당 기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 및 알려진 범위, 알려진 경우 신청자가 사용했다고 주장되는 gTLD 사용 건이나 신청자에 의한 잠재적인 gTLD 사용 시 권한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며 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8. 신청자가 의도한 gTLD 사용으로 인해 gTLD 의 출처, 등록 후원 자격, 소속 또는 승인에 대해 이의제기자의 마크와의 혼동 가능성이 발생하는지 여부.

3.4.3 윤리 및 공공 질서 이의제기

윤리 및 공공 질서 이의제기에 대한 전문가 패널 심리에서는 신청 gTLD 문자열이 윤리 및 공공 질서에 대한 해당 국제 계약에 반영된 국제법 일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이들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 및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특정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에 따라 신청 gTLD 문자열이 윤리 및 공공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적인 불법 행위 선동 또는 조장

- 인종, 피부색, 성별, 민족, 종교 또는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 선동 또는 조장
- 어린이 포르노 또는 기타 성적 학대 선동이나 조장 또는
- 신청 gTLD 문자열이 윤리 및 공공 질서와 관련하여 국제법 일반 원칙에서 인정되는 바와 동등하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법적 표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

3.4.4 커뮤니티 이의제기

DRSP 패널은 이 문서에 설명된 4 가지 테스트를 활용하여 문자열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상당 부분으로부터 실질적인 반대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성공하려면 이의제기자는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자가 시작한 커뮤니티는 명확히 정의된 커뮤니티여야 합니다.
- 신청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대가 실질적입니다.
- 시작된 커뮤니티와 신청 gTLD 문자열 사이에 강력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 gTLD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이의제기자가 언급한 커뮤니티에 손실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테스트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커뮤니티- 이의제기자는 반대를 표명하는 커뮤니티가 명확히 정의된 커뮤니티로 간주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패널은 이를 결정하는 다수의 요소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그룹을 현지 및/또는 글로벌 수준 커뮤니티로 간주하는 대중의 인지 수준
- 커뮤니티를 둘러싼 정식 경계의 수준 및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커뮤니티가 존재한 기간
- 커뮤니티의 글로벌 분포(특정 영역에 속한 커뮤니티인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및
-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

다수의 개인/단체에 의한 반대가 있지만 이의제기자가 대표하는 그룹이 명확히 정의된 커뮤니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는 실패합니다.

실질적인 반대 - 이의제기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것으로 밝힌 커뮤니티 내에 실질적인 반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패널은 실질적인 반대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수의 요소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커뮤니티 구성에 대해 상대적인 반대 표명의 수
- 반대를 제기한 커뮤니티 사이에서 인정되는 위상 또는 비중의 수준
- 다음을 비롯하여 반대를 표명한 커뮤니티 사이에서의 분포 또는 다양성
 - 지역별
 - 커뮤니티의 하위 부문
 - 커뮤니티의 리더십
 - 커뮤니티의 회원 자격
- 다른 상황에서 커뮤니티의 방어 내역 및
- 이의제기자가 반대를 표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의제기자가 반대를 전달하는 데 사용했을 수 있는 기타 채널 포함).

커뮤니티 내의 반대가 확인되었지만 실질적인 반대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는 실패합니다.

대상 지정 - 이의제기자는 신청 gTLD 문자열과 이의제기자가 대표하는 커뮤니티 간의 강력한 관련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패널이 조절할 수 있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청에 포함된 진술서
- 신청자가 제공하는 기타 공개적 진술서
- 일반 대중이 가진 연상.

커뮤니티의 반대가 확인되었지만 커뮤니티와 신청 gTLD 문자열 간의 강력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이의제기는 실패합니다.

손실 - 이의제기자는 관련 커뮤니티의 권한 또는 법적 이익에 손실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데 패널이 사용할 수 있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청 gTLD 문자열에 대한 신청자의 운영의 결과로 커뮤니티의 평판에 미치는 손해
- 신청자가 보다 광범위하게 커뮤니티 및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지 않거나 행동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사용자 이익을 위해 신청자가 제안하지 않았거나 효율적인 보안 보호를 시행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 포함)
- 신청 gTLD 문자열에 대한 신청자의 운영의 결과로 발생한 커뮤니티 핵심 활동 방해 및
- 커뮤니티의 핵심 활동을 위한 DNS 에 대한 의존성.

커뮤니티의 반대가 확인되었지만 신청 gTLD 문자열에 대한 신청자의 운영의 결과로 커뮤니티에 미치는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의제기는 실패합니다.

이의제기가 승소하려면 이의제기자는 표준 테스트 4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이의제기에 대한 방어 - 커뮤니티 기반 신청자에 의한 커뮤니티 이의제기 신청을 위한 요구 사항(3.1.2.4 조항 참조)을 충족하는 것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신청되는 이의제기에 대한 완전한 방어입니다.

완전한 방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신청자는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내용을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확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이의제기의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의 소유자인 표준 신청자는 요구 사항에 근거한 완전한 방어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상대로 커뮤니티 이의제기가 신청된 경우 표준 신청자는 승소할 수 있으며, 또는 신청자는 이의제기에 대한 방어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초안 - 신규 gTLD 프로그램 - 이의제기 및 분쟁 해결

